

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영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1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4. 5.

발의자 : 최영희 · 박대수 · 김상훈
하영제 · 김승수 · 이현승
이용 · 이채익 · 송석준
홍문표 · 김학용 · 김성원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, 임산부, 아동, 노인,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
그런데, 장애인은 이 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,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관계성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(안 제11조제1호).

법률 제 호

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호 중 “노숙인”을 “노숙인, 장애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 관리사업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영유아, 임산부, 아동, 노인, <u>노숙인</u>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</p> <p>2. 3. (생 략)</p>	<p>제11조(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 관리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노숙인</u>, <u>장애인</u>----- ----- 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